#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(김병욱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10190

발의연월일: 2021. 5. 18.

발 의 자 : 김병욱 • 박찬대 • 정성호

안민석 • 문진석 • 전용기

김남국 • 이용빈 • 임종성

홍정민 · 이정문 의원

(11인)

### 제안이유

최근 가상자산 일 거래량이 주식시장을 뛰어 넘을 만큼 급격하게 증가하고, 특히 우리나라는 가상자산에 김치프리미엄이 붙는 등 시장 과열양상이 나타나고 있음.

가상자산과 관련해서는 FATF에서 자금세탁방지에 대한 세계적인 권고를 반영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었으나, 이는 자금세탁 및 테러방지를 목적으로 한 법인만큼 가상자산 관련한 산업이나 이용자에 대한 규정을 둔 별도의 법안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건전한 시장 발전이 어려운 상황임.

이에 국가가 블록체인 기술의 연구·개발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지원하는 등 구체적 노력을 하 도록 하며, 가상자산사업자의 등록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정을 두어 제 도권 내에서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자율규제 및 책임을 부과하는 등 실 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가상자산 시장의 위험을 해소하고 이용자는 보호하는 등 건전하고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려 함.

### 주요내용

- 가. 이 법은 블록체인 기술 및 가상자산업 발전에 필요한 사항과 이용

  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블록체인 기술 및 가상자산업을
  진흥하고 건전한 시장질서와 신뢰성을 확보하는 한편, 가상자산업의
  이용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(안 제1조).
- 나. 국가는 블록체인 기술의 연구·개발을 촉진하고 그 성과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,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함(안 제5조).
- 다. 가상자산거래업 및 가상자산보관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등록을, 일 반적인 가상자산업을 하려는 자는 신고를 금융위원회에 하도록 함 (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).
- 라. 가상자산사업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야 하며, 이해상충 관리의무를 둠(안 제10조 및 제11조).
- 마.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부풀려 광고하는 행위 등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 행위를 금지함(안 제12조).
- 바. 가상자산거래업자가 가상자산에 대한 상장 등을 할 경우 발행자에

대한 정보확인 의무를 부여함(안 제13조).

- 사. 가상자산거래업자가 온라인시스템에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를 공시 하도록 함(안 제14조).
- 아. 가상자산거래업자의 예치금 보관의무 및 가상자산사업자의 가상자산 보관의무를 규정함(안 제15조 및 제16조).
- 자. 가상자산사업자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 및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함(안 제18조 및 제19조).
- 차. 가상자산거래업자는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상 시적으로 자율감시하도록 하고, 협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함 (안 제20조).
- 카. 가상자산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함(안 제21조).
- 타. 가상자산업의 업무질서를 유지하고, 가상자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가상자산업협회를 설립하도록 하고, 자율규 제 기능을 부여함(안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).
- 파. 금융위원회의 가상자산사업자의 업무 감독 및 영업정지 등을 규율함(안 제28조부터 제31조까지).
- 하. 이 법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명시함(안 제32 조부터 제34조까지).

###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

#### 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법은 블록체인 기술 및 가상자산업 발전에 필요한 사항과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블록체인 기술 및 가상자산업을 진흥하고 건전한 시장질서와 신뢰성을 확보하는 한편, 가상자산업의 이용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가상자산"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(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)를 말한다. 다만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.
  - 가. 화폐·재화·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이 사용처와 그 용도를 제한한 것
  - 나. 「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3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·무형의 결과물

- 다. 「전자금융거래법」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같은 조 제15호에 따른 전자화폐
- 라. 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 등
- 마. 「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어음
- 바. 「상법」 제862조에 따른 전자선하증권
- 사. 거래의 형태와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
- 2. "가상자산업"이란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.
  - 가. 가상자산을 매도, 매수하는 행위
  - 나.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하는 행위
  - 다. 고객의 요청에 따라 가상자산의 매매, 교환, 보관 또는 관리 등을 위하여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
  - 라. 가상자산을 보관 또는 관리하는 행위
  - 마.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행위
  - 바. 가목 및 나목의 행위를 중개, 알선하거나 대행하는 행위
  - 사. 그 밖에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
- 3. "가상자산사업자"란 가상자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제7조에 따라 가상자산업의 신고 또는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.
- 4. "가상자산거래업"이란 가상자산업 중 가상자산의 매매 또는 다른

가상자산과의 교환 행위를 중개, 알선하거나 대행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.

- 5. "가상자산거래업자"란 가상자산거래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제7조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.
- 6. "가상자산보관관리업"이란 가상자산업 중 타인을 위하여 가상자산을 보관 또는 관리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, 「신탁법」에 따른 가상자산의 신탁사무를 영업으로 하는 것(「신탁법」제78조제1항에 따른 수익증권발행신탁은 제외한다)을 포함한다.
- 7. "가상자산보관관리업자"란 가상자산보관관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제7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.
- 8. "블록체인 기술"이란 분산원장기술로서 거래정보를 기록한 원장을 특정 기관의 중앙 서버가 아닌 분산된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 공동으로 기록하고 관리하는 기술을 말한다.
- 9. "온라인시스템"이란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에 관한 계약의체결, 각종 정보공시 등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가상자산업의 제반업무에 이용하는 인터넷 홈페이지, 모바일 응용프로그램 및 이에준하는 전자적 시스템을 말한다.
- 10. "이용자"란 가상자산사업자가 영업으로 제공하는 용역을 이용하 거나 이를 통해 가상자산을 매매, 교환, 취득 또는 관리 등의 행위 를 하는 자를 말한다.
- 11. "백서"란 가상자산 발행자의 사업계획 등을 담은 문서를 말한다.

- 제3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① 가상자산업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  - ② 가상자산 중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상의 증권의 성격을 가지는 가상자산과 그에 관한 가상자산업에 대해서는 이법과 함께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의 관련 규정이우선 적용되고, 이 법과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이충돌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 법이 적용된다.
- 제4조(역외적용) 이 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적용한다.
- 제5조(국가의 책무) 국가는 블록체인 기술의 연구·개발을 촉진하고 그성과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,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.

### 제2장 가상자산업의 신고 및 등록

- 제6조(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)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가상자산거래업자 또는 가상자산보관관리업자의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제7조(신고 및 등록) ① 가상자산업(가상자산거래업 및 가상자산보관 과리업은 제외한다)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금

- 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.
- 1. 신청인이 「상법」에 따른 주식회사일 것
- 2. 이용자의 보호가 가능하고 해당 가상자산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전산설비,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
- 3. 운영하고자 하는 가상자산업 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
- 4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
- ② 가상자산거래업 또는 가상자산보관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.
- 1. 신청인이 「상법」에 따른 주식회사일 것
- 2. 5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
- 3. 이용자의 보호가 가능하고 해당 가상자산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전산설비,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
- 4. 운영하고자 하는 가상자산업 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
- 5. 임원이 제8조제1항에 적합할 것
- 6. 특정 이용자와 다른 이용자 간, 가상자산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(제11조의 이해상충방지 체계를 말 한다)를 포함하여 적절한 내부통제장치가 마련되어 있을 것
- 7. 그 밖에 재무건전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와 법령 위반사실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사회적 신 용을 갖출 것

-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서를,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④ 금융위원회는 제2항의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2개월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, 그 결과와 이유를 지 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등록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.
- ⑤ 제4항의 검토기간을 산정할 때 등록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검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- ⑥ 금융위원회는 제4항의 등록 여부를 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면 등록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1. 제2항의 등록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
- 2. 제3항의 등록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
- 3. 제4항 후단의 보완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
- 4. 등록 대상 가상자산거래업이 가상자산과 법정통화와의 교환을 예정하고 있어 「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」(이하 "특정금융정보법"이라 한다) 상 자금세탁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금융위원회는 등록 여부를 결정할 때 해당 가상자산거래업자가 특정금융정보법 상 요구되는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.
- ⑦ 금융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등록을 결정한 경우에는 해당 등록 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, 등록결정한 내용을 보관 및

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.

- ⑧ 가상자산거래업자와 가상자산보관관리업자는 등록 이후 그 영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등록요건을 유지하여야 한다.
-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및 등록요건, 신고서 및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·첨부서류 등 신고 및 등록 신청에 관한 사항 및 신고 및 등록 검토의 방법·절차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8조(임원의 자격요건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상자산거래업자와 가상자산보관관리업자의 임원이 되지 못한다.
  - 1. 미성년자 ·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  - 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(復權)되지 아니한 사람
  - 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 지 아니한 사람
  - 4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  - 5. 이 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 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- ② 가상자산거래업자와 가상자산보관관리업자의 임원으로 선임된 사람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(職) 을 잃는다.
- 제9조(변경신고 및 변경등록) ① 가상자산사업자(가상자산거래업자 및 가상자산보관관리업자는 제외한다)는 제7조제3항에 따라 제출한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변경신고하여야 한다.
  - ② 가상자산거래업자 또는 가상자산보관관리업자는 제7조제3항에 따라 제출한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변경등록하여야 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.
  - ③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 및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# 제3장 가상자산사업자의 행위 준칙

제10조(신의성실의무 등) ①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에 관한 계약의 체결, 권리의 행사 및 의무의 이행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하여야 한다.

- ②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업무의 내용과 절차를 공정히 하여야 하며,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의 이익을 해 치면서 자기가 이익을 얻거나 제3자가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.
- 제11조(이해상충의 관리) ①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사업자와 이용자 간, 특정 이용자와 다른 이용자 간, 가상자산사업자와 가상자산발행자 사이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・평가하고, 내부통제기준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따라 이를 적절히 관리하여야 한다.
  - ② 가상자산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·평가한 결과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미리 해당 이용자에게 알려야 하며, 그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내부통제기준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이용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.
- 제12조(광고) ① 가상자산사업자가 「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(이하 "광고"라 한다)를 하는 경우에는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  - 1.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는 행위
  - 2.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광고하는 행위
  - 3. 비교대상 및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

없이 가상자산의 전망에 대하여 광고하는 행위

- 4.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에 관하여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광고하여 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광고하여 다른 가상자산사 업자를 비방하는 광고행위
- 5. 원금보장, 확정수익 등 이용자들이 투자원금 및 수익이 보장된다 고 오인할 소지가 있는 내용으로 광고하는 행위
- 6. 그 밖에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행위
- ② 가상자산사업자는 명시적으로 사전 동의를 하지 않은 고객에게 방문, 전화, 이메일 전송 등의 방법을 통하여 가상자산사업자 및 가상자산에 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③ 가상자산사업자는 광고를 받은 고객이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광고를 계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제외한다.
- ④ 그 밖에 광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.
- 제13조(발행자에 대한 정보확인 등) ① 가상자산거래업자는 가상자산에 대한 상장 등을 할 경우 이를 이행하기 전에 발행자의 백서, 가상자산 분배 현황, 사업자 명칭 및 직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 등을 제출받아 그 발행 주체가 되는 사업자, 사업장 소재

- 지, 사업자 소속 임직원 및 사업 현황을 확인하여야 한다.
- ② 가상자산거래업자는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정보 등을 가상자산 상장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용도 및 이용자에 대한 정보 제공 이외 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제14조(가상자산에 대한 정보공시) ① 가상자산거래업자는 이용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이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온 라인시스템에 게시함으로써 제공하여야 한다.
  - 1. 가상자산 발행자 및 그 특수관계인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
  - 2. 원금 손실 가능성 및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닌 점 등 가상자산 거 래에 따른 위험
  - 3. 가상자산 교환·매매·보관 수수료에 관한 사항
  - 4.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세금에 관한 사항
  - 5. 가상자산의 상장과 관련하여 가상자산거래업자가 수령하는 대가 가 있는 경우 해당 금액 및 관련 규정
  - 6. 이용자들의 투자 판단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  - ② 가상자산거래업자는 이용자가 가상자산 거래를 개시하기 전에 제1항에 따라 게시한 내용을 이용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(「전자서명법」 제2조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), 기명날인, 녹취, 전자우편,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 받아야 한다.
  - ③ 가상자산거래업자는 제1항에 따라 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

경우에는 이용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상품의 가치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누락하거나 거짓 또는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.

- 제15조(가상자산거래업자의 예치금 보관의무) ① 가상자산거래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(이하 "예치기관"이라 한다)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야 한다.
  - ② 가상자산거래업자는 제1항에 따라 예치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된 이용자의 예치금이 이용자의 재산이라는 뜻을 밝혀야 한다.
  -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예치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된 이용자의 예치금 반환채권을 상계·압류(가압류를 포함한다)하지 못하며, 가 상자산거래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예치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된 이용자의 예치금의 반환채권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.
  - ④ 가상자산거래업자는 등록취소, 해산결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예치 또는 신탁된 이용자의 예치 금이 이용자에게 우선하여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
- 제16조(가상자산사업자의 가상자산 보관의무) ①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가상자산을 보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사항을 기재한 이용자명부를 작성·비치하여야 한다.
  - 1. 이용자의 주소 및 성명
  - 2. 이용자가 소유하는 가상자산의 종류 및 수량

- ② 가상자산사업자는 자기 소유 가상자산과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하며, 이용자로부터 위탁받은 종류와 수량의 가상자산을 현실적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.
- ③ 가상자산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보관하는 이용자의 가상자산 중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가상자산을 인터넷과 분리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.
- 제17조(약관의 제·개정 등) ①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여야 하며, 가상자산업과 관련된 약관(이하 "약관"이라 한다)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.
  - 1.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
  - 2.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의 권리를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등 부당하게 불리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
  - ② 가상자산사업자는 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, 온라인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.
  - ③ 가상자산업협회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이 통용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가상자산업과 관련하여 표준이 되는 약관(이하 "표준약관"이라 한다)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.
  - ④ 가상자산업협회는 표준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.

- ⑤ 금융위원회는 약관 또는 표준약관이 이 법 또는 금융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그 밖에 이용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가상자산사업자 또는 가상자산업협회에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적은 서면으로 약관 또는 표준약관을 변경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. 금융위원회는 이 변경명령을 하기 전에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.
-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약관 및 표준약관의 제정 또는 개정에 대한 신고 및 보고의 시기·절차,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.

#### 제4장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등

- 제18조(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(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)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(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를 가상자산의 매매,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.
  - 1. 가상자산사업자 및 그 가상자산사업자의 임직원·대리인으로서

- 그 직무와 관련하여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
- 2. 가상자산사업자의 주요 주주로서 그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
- 3.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법령에 따른 허가·인가·지도·감독, 그 밖의 권한을 가지는 자로서 그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미공 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
- 4. 가상자산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나 체결을 교섭하고 있는 자로서 그 계약을 체결·교섭 또는 이행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중요 정보를 알게 된 자
- 5.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대리인(이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 및 그 대리인을 포함한다)·사용인, 그 밖의 종업원(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 및 대리인)으로서 그직무와 관련하여 미공개 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
- 6.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(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)로부터 미공개중요정보를 받은 자제19조(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) ① 누구든지 가상자산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,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- 1. 자기가 매도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으로 타인이 그 가상자산을 매수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도하는 행위
- 2. 자기가 매수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으로 타인이 그 가상자산을 매도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수하는 행위
- 3. 그 가상자산의 매매를 함에 있어서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는 행위
- 4.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를 위탁하거나 수탁하는 행위
- ② 누구든지 가상자산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1. 그 가상자산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(가상자산을 교환하거나 거래하는 시장에서 형성된 시세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세를 말한다. 이하 같다)를 변동시키는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
- 2. 그 가상자산의 시세가 자기 또는 타인의 시장 조작에 의하여 변 동한다는 말을 유포하는 행위
- 3. 그 가상자산의 매매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거짓의 표시 또는 오해를 유발시키는 표시를 하는 행위
- ③ 누구든지 가상자산의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그 가상자산에 관한 일련의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제20조(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자율감시) ① 가상자산거래업자는 이용

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장감시 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.

- 1. 상장한 가상자산 호가의 상황
- 2. 상장한 가상자산과 그 발행인 등에 관한 신고 또는 공시
- 3. 그 밖에 가격 형성이나 거래량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또는 요인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
- ② 가상자산거래업자는 시장감시 결과와 이에 대해 가상자산거래업자가 취한 조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협회에 정기적으로보고해야 한다. 보고의 방법, 내용, 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③ 협회는 시장감시 결과에 위법이 의심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금융위원회에 지체없이 보고하고, 금융위원회는 이에 대하여 조사한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- 제21조(손해배상책임) ① 가상자산사업자는 그 사업을 영위하면서 다음의 행위를 함으로써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. 다만, 배상의 책임을 질 가상자산사업자가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한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 - 1. 법령·약관·기타 이용자에게 교부되는 서류에 위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
  - 2. 정당한 사유 없이 고객의 현금 또는 가상자산에 대한 출금신청을

거부하는 경우

- 3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
- ② 가상자산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금융위 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#### 제5장 가상자산업협회

- 제22조(가상자산업협회 설립 등) ① 가상자산업의 업무질서를 유지하고, 가상자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가상자산업 협회(이하 "협회"라 한다)를 설립한다.
  -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.
  - ③ 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를 두고 필요한 곳에 지회를 둘 수 있다.
  - ④ 협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.
  - ⑤ 이 법에 따른 협회가 아닌 자는 가상자산업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어문자를 포함한다)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제23조(업무) ①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.
  - 1.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회원에 대한 지도

와 권고

- 2. 회원 간의 건전한 영업질서 유지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자율규제업무
- 3. 가상자산업의 이용자 민원의 상담ㆍ처리
- 4. 가상자산사업자와 이용자 사이의 분쟁조정
- 5. 표준약관 및 가상자산업의 종류에 따른 영업행위 규칙의 제정 및 개정
- 6.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가상자산 발행기준, 공시기준 및 상장기준 마련 및 준수 여부 점검 업무
- 7. 가상자산사업자의 임직원 및 이용자 교육에 관한 업무
- 8. 가상자산사업자의 정보관리 실태 점검에 관한 업무
- 9. 가상자산업 관련 연수 업무
- 10.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 받은 업무
- 11. 그 밖에 협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
- ② 협회는 업무에 관한 규정을 제정·변경하거나 폐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.
- 제24조(정관) ①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.
  - 1. 목적
  - 2. 명칭

- 3. 조직에 관한 사항
- 4. 사무소에 관한 사항
- 5. 업무에 관한 사항
- 6. 회원의 자격 및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
- 7. 회원의 가입, 제명 및 그 밖의 제재(회원의 임직원에 대한 제재의 권고를 포함한다)에 관한 사항
- 8. 회비에 관한 사항
- 9. 공고의 방법
- 10. 그 밖에 협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- ② 협회는 정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제25조(가입 등) ① 가상자산사업자는 협회에 가입하여야 한다.
  - ② 협회는 가상자산사업자가 협회에 가입하려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가입을 거부하거나 가입에 부당한 조건을 부과하여서 는 아니 된다.
  - ③ 협회는 회원에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.
- 제26조(협회에 대한 감독) 금융위원회는 이용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거 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협회 및 협회의 업무에 대하여 감독하며, 이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.

제27조(「민법」의 준용) 협회에 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「민법」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
#### 제6장 감독 및 영업정지 등

- 제28조(감독) ①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제20조 불공정거래행위의 자율감시 의무사항을 적절히 준수하는지의 여부를 감독하고, 감독에 필요한 명령 또는 지시를 할 수 있으며, 가상자산사업자의 업무를 검사할 수 있다.
  -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해당 가상 자산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.
  - 1. 위반행위의 시정명령
  - 2. 경고
  - 3. 주의
  -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위반 행위와 관련된 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 줄 것을 해당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.
  - 1. 해임권고

- 2. 6개월 이내 직무정지
- 3. 문책경고
- 제29조(자료제출의 요구)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 또는 그의 대주주 및 임직원이 이 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가상자산사업자 또는 그의 대주주 및 임직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- 제30조(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) ①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가상자산사업자에게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.
  - 1.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
  - 2.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고를 3회 이상 받은 경우
  - ②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가상자산사업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.
  - 1.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
  - 2. 제7조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
  - 3. 제7조제8항에 따른 등록요건의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
  - 4. 가상자산사업자의 임원이 제8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
  - 5.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업실적이 없거나 법인의 파산ㆍ폐업 등으

로 사실상 영업을 끝낸 경우

- 6. 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명령을 받고도 그 영업정지 기간 이내에 영업정지처분 사유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
-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등록취소를 하기 전에 해당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청문을 하여야 한다.
- 제31조(업무위탁)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.

#### 제7장 처벌

- 제32조(벌칙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  - 1. 제6조를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가상자산업을 영위하는 자(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가상자산업을 영위하는 자를 포함한다)
  - 2.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미공개중요정보를 가상자산의 매매,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자
  - 3. 제19조 각 항을 위반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
  - ② 다음 호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  - 1.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(거짓이나 그

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한 자를 포함한다)

- 제33조(양벌규정) 법인의 대표자나 대리인,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2조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항의 벌금형을 과(科)한다. 다만,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제34조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  - 1. 제7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상자산업(가상자산거 래업 및 가상자산보관관리업을 제외한다)을 영위한 자
  - 2. 제13조에 따른 정보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
  - 3. 제14조에 따른 정보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
  - 4.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치금 보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
  - ②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  - 1.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(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한 자를 포함한다)
  - 2. 제12조를 위반하여 광고한 자
  - 3. 제17조에 따른 약관 관련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「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하여 수리가 된 가상자산사업자는 이 법에 따라 등록을 받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.